

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(부설 자살예방센터)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51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9.
제출자 : 하남시장

1. 민간위탁 목적

-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「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(부설 자살예방센터)」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2.12.31.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효과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민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관련 근거
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(정신건강 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
- 「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4조 (센터의 운영)
- 「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6조 (의회 동의 등)

3. 민간위탁 내용

- 위탁자 : 하남시장
- 수탁자 :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관
- 위탁기간 : 2023.1.1. ~ 2025.12.31. (3년)
- 위탁내용 :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(부설 자살예방센터) 운영

연번	사업 구분	사업 내용
1	정신건강증진사업	-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선별검사 -청년여성노인 등 정신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-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주민 홍보, 교육, 캠페인 및 상담 -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이상반응 경험자 등 재난심리지원

2	아동·청소년 정신건강사업	-관내 학교·아동센터 등 유관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고위험군 조기발굴 -아동·청소년 대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교육 -고위험군 대상 심층사정평가·상담·등록·사례관리·집단프로그램 제공 -외래치료비, 진단검사비 등 치료비 지원
3	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	-관내 정신의료기관·행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-중증정신질환자의 요구에 따른 개별서비스 계획 수립 및 사례관리 -정신질환자 및 가족 교육, 사회재활 프로그램 운영 -외래치료비, 응급입원비, 행정입원비 등 치료비 지원
4	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	-자살시도 등 정신과적 위기상황 발생 시 경찰·소방과의 협력을 통한 위기개입
5	자살예방사업 및 노인우울예방사업	-자·타해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위기개입, 사후관리 및 행정입원연계 -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대상자 사례관리 -자살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자살예방교육
6	네트워크 구축 및 행정지원 업무	-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-정신건강 심사위원회 업무 지원

4. 민간위탁 추진 일정(안)

일 정	추진 내용	비고
2022.09.19. ~ 2022.10.07.	하남시 시의회 「민간위탁사업 운영 동의안」 상정	
2022.10.11. ~ 2022.10.24.	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	
2022.10.25. ~ 2022.10.31.	재공고(필요시)	
2022.11.07. ~ 2022.11.30.	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위탁대상기관 선정	
2022.12.01. ~ 2022.12.20.	위탁계약 체결 및 위탁사무 인계인수	
2023.01.01. ~ 2025.12.31.	위탁사업 실시	

5. 민간위탁 소요 예산

○ 연 1,604,539천원 (국비22%, 도비15%, 시비63%)

※ 2022년 예산 기준, 2023-2025년도 예산은 보조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변동 가능

6. 민간 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

- 위탁을 통한 민·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정신건강 전문인력 및 자원활용의 효율화
- 전문적이고 통합된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
- 정신과적 위기관리 및 자살에 대한 적극적·전문적인 개입 가능

7. 기타사항

- 위탁시설 현황
 - 시설명 :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(부설 자살예방센터)
 - 위치 :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 (미사보건센터)
 - 인력현황 : 총 26명 (센터장 1명, 정신건강간호사 3명, 간호사 2명,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1명, 사회복지사 5명, 임상심리사 1명, 작업치료사 2명, 행정 1명)
- 참고자료
 - 관계법령 발췌서 1부
 -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1부 (별첨)

□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
제15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 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·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 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 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(이하 “보건소”라 한다)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(이하 “보호의무자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.

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.

⑦ 시·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시·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⑧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4조(센터의 운영)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·관리한다. 다만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.

□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제6조(의회 동의 등) ① 시장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하남시 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에 있어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3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수탁기간 1년 이하인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
2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명
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3. 위탁사무 내용
4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5. 민간위탁기간
6. 수탁자 선정방식
7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8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9.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
10.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